

## 2025년 농식품신산업분야 「혁신 프리미어 1000」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및 농식품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농식품 신산업 분야(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우수 기업을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정책 금융기관의 금리 감면,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5년 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공통 안내

#### 가. 사업 개요

- 미래 유망산업, 글로벌 초격차 산업 등 국가 주요 산업 내 우수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을 선정하고, 대출·보증·투자 등 정책금융을 우선 지원하여, 국가 주요 산업 및 우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매년 상반기 500개사를 선정하며 선정기업은 익년 말까지 유효
    - \* 대환, 기한연장시 등에 동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선정을 통한 자격유지 필요
    - 농식품 신산업 분야(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는 '25년 25개사 배정
  -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종합지원반에서는 기업별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정책금융기관 상품 중 최고 수준 우대)

## 나. 모집 대상

- 혁신성장 공동기준 내 농식품 신산업(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에 부합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총 25개소

\* 자세한 사항은 '4p 및 [붙임4] 혁신성장 공동기준 리스트' 참고

구분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동물용의약품	합계
반영(안)	8	7	10	3	25

※ 산업별로 각각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해당 산업 수요가 미달되는 경우 협의를 통해 타 산업 기업으로 대체 선정 가능

## 다. 지원내용(안)

※ 선정된 이후 종합지원반(정책금융기관)에서 금융·비금융 지원 혜택을 확정하고 안내할 계획

- (금융지원) 혁신 프리미어 기업 전용상품을 신설하여 현 정책금융 기관의 상품 중 최고 수준의 우대를 지원

< 정책금융기관별 주요 금융지원 관련 혜택(안) >

기 관	혜 택
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용상품 사용시 금리 최대 △0.9%p(원화 기준) 감면</li><li>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우대</li><li>내부평가 실적집계 가중치 부여</li></ul>
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금리 최대 △1.0%p 감면</li><li>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li><li>수출자금의 경우 수출실적의 100% 이내로 한도 확대 (vs. 50~90%)</li></ul>
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금리 최대 △1.3%p 감면</li><li>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90%로 한도 확대 (vs. 80%)</li><li>내부평가 실적집계 가중치(+30%) 부여</li></ul>
신용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보증비율 95% (vs. 평균 85% 수준)</li><li>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150억원으로 적용 (vs. 100억원)</li><li>운전자금 한도를 추정 매출액의 1/4~1/2로 확대 (vs. 1/4~1/3) ※ 5억원 이하는 한도사정 생략</li></ul>
기술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보증비율 95% (vs. 평균 85% 수준)</li><li>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200억원으로 적용 (vs. 100억원)</li><li>3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한도를 추정 매출액의 1/2로 확대 (vs. 1/4~1/3) ※ 5억원 이하는 한도사정 생략</li></ul>

- (비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해외판로 개척·박람회 및 맞춤형 컨설팅 (세무·회계·인사·노무 등) 등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 주기적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6] '혁신 프리미어 1000 기관별 비금융지원' 참조

< 정책금융기관별 주요 비금융지원(안)>

유형	개요
민간투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DB NextRound) 스타트업-VC 연결을 위한 투자유치 플랫폼 (산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라운드(매주 3회), 스페셜 라운드(연 10회 내외)</li> </ul> </li> <li>(U-CONNECT) 사업개시 후 7년 이내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민간투자유치 플랫폼 (신보)</li> <li>(핀테크워크) Reverse IR, 핀테크 스타트업 1:1 투자밋업 (성장금융)</li> </ul>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BK 컨설팅)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 (기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 기업승계, 세무·회계, 경영, 인사·조직, 노무, ESG 등</li> </ul> </li> <li>(기술경영 컨설팅) 경영 및 기술현황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개선 (기보)</li> </ul>
스타트업 F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extRise) 1:1 밋업, 부스전시 등 글로벌 스타트업 Fair (산은, 연 1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BK Trade Club) 해외시장 진출 또는 해외 거래처 발굴 희망 기업에 글로벌 제휴은행의 기업고객과 거래 매칭 (기은)</li> <li>(해외사업개발 지원 플랫폼) 해외사업 발굴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사 및 입찰 관련 용역비용 지원 (수은)</li> </ul>

## 라. 신청자격 등

### □ 신청자격

- 중견<sup>1)</sup>·중소기업<sup>2)</sup> 중 「혁신성장 공동기준」 중 농식품 신산업에 해당하는 12개 품목을 취급하며,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하는 기업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의 기업
- ① 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 2. 1조~7조에 해당(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은행, 신·기보,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등 포함)
- ②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 ③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별 담당기관\*이 추천하는 기업(산업별 2배수 이내)
  - \* 농진원(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푸드테크)
  - \*\* A-벤처스, 창업콘테스트 수상,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 산업별 주요사업 등에 선정되었거나 담당기관이 각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라 판단하는 기업

**<혁신성장공동기준(6차 개정, '24.12월) 내 농식품 신산업 품목(12개)>**

테마명	분야명	품목코드	품목명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스마트 농축수산	D16001	수직농법
		D16002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D17001	곤충사육
		D17002	농업용 미생물
		D17003	종자 개발·육종
		D17004	동물용 의약품
		D17005	식품소재/첨가물
		D17006	천연추출물
	푸드테크	D18001	간편식
		D18002	케어푸드
		D18003	대체식품
		D18004	푸드 업사이클링

\* 자세한 사항은 [붙임5]의 '혁신성장 공동기준(6차 개정) 품목설명서' 참조

**선정제외 기준**

- 아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신청 불가

주체	결격사유 점검항목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li> <li>②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li> </ul>
종합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최근 1년 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li> <li>②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M&amp;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 폐업,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된 경우</li> <li>③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li> <li>④ 최근 회계연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li> <li>⑤ 최근 회계연도상 3년 평균 매출증감 △10% 이상인 기업</li> <li>⑥ 최근 회계연도상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li> </ul>

\* 단, ⑤·⑥에 해당하나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가능 → 이 경우 투자실적 증명을 위한 투자확인서, 주주명부 등 제출 필요

\*\* 최근 회계연도 : 2023년, 최근 3년 회계연도 : 2021~2023년

## 마. 선정방법

### □ 평가방법

#### ① (서류 검토) 제출 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선정제외기준의 부처 결격사유는 부처 담당자가 확인 예정

#### ② (서면 평가) 보유 기술의 혁신성, 기업의 성장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등 정성 평가(전문가 심의위원회 활용)

\* 각 산업별(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전문가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서면평가 실시

- 서면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은 “선정가능 기업”으로 분류,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로 분류

#### < 서면평가 항목 및 배점(안)>

구분	평가내용	배점	비 고
기술 혁신성	<p>⑨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 수준            - 보유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            - 기술의 완성도와 적용 가능성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보유 현황</p>	25	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 특허 증빙자료 등
	<p>⑩ 기술 상용화 및 시장 경쟁력            - 기술 상용화 가능성(제품화·서비스화 수준 및 구체성)            - 기술의 시장 경쟁력(유사 기술 대비 우위)            -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잠재력</p>	25	주요 시장 분석 자료, 제품화 전략 자료 등
성장 가능성	<p>⑪ 해당 시장의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            - 해당 기술이 진입하려는 시장의 성장률(최근 5년 기준)            - 시장 내 경쟁 강도와 진입 장벽, 기술과 시장 성장성의 적합성 등</p>	10	시장 분석 보고서, 산업 전망 자료 등
	<p>⑫ 재무 건전성과 성장 추이            - 최근 3년간 재무성과(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성장 여부, 단,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 반영하지 않음            - 재무 안정성(부채비율 250% 이하, 자본 활용 효율성 등), 단,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500% 이하</p>	15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
	<p>⑬ 사업 확장 및 투자 유치 역량            - 투자 유치 실적(최근 3년간 투자금액 및 출처)            - 신규 사업 확장 계획(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자금 수요와 확보 전략의 필요성 및 당위성</p>	15	주주명부, 투자계획서, 사업 확장 계획 자료 등
	<p>⑭ 조직 역량 및 전문 인력 확보            - 최근 3년간 고용 현황 및 인재 확보 노력            - 팀 구성원의 전문성(학력, 경력, 자격증 등) 및 협업 역량            - 조직 유지 및 발전 전략(인재 육성, 복지제도 등)</p>	10	조직 구성도, 인재 관리 계획, 프로젝트 이력 및 성과 자료
<b>총 계</b>		<b>100</b>	-

#### ③ (결격사유 검토) 기업의 결격사유 해당 검토(농식품부, 종합지원반)

\* 서면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제외”로 분류할 예정

## 바. 지원기간 및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기간 : 선정 시 ~ '26년 말

□ 기타 유의사항

- ①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금융지원(대출·보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선정 후 금융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른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금융지원 여부가 결정됨
- ② 신청기업은 선정 과정 및 선정 후 금융·비금융지원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2. 정책금융 우대 절차

### 〈선정 절차〉

- ① 신청 희망 기업은 ‘라.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 점검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 증빙서류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온라인으로 제출(2월)
  - \* 신청서, 신청자격 셀프점검리스트, 개인정보동의서는 [붙임1~3] 양식 참조
  - \*\* 온라인(투자정보 플랫폼 assist.apfs.kr) 접속 및 회원가입 → ‘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7] ‘혁신프리미어 1000 신청매뉴얼’ 참조
- 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산업별 담당자는 각 전문가 심의위원회(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별도 구성)를 통해 서면평가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종합지원반에 송부(3월)
- ③ 종합지원반에서 결격사유 검토 및 혁신프리미어 1000 기업 선정 발표(3월 말~4월)  
※ 담당기관은 증빙자료 검토과정에서 기업에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정기업 지원 절차〉

- ③ 선정된 기업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금융·비금융지원 신청서를 종합지원반에 접수(수시)
  - \* 온라인(종합지원반 홈페이지: [www.newgi.org](http://www.newgi.org) 접속 → ‘혁신프리미어1000’ 클릭)  
오프라인(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
- ④ 종합지원반은 신청자격 체크리스트·기업개요·지원수요 유형·기준 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여 담당 금융기관 배정 및 밀착관리  
\* 비금융지원은 배정된 담당 금융기관 외에 다른기관의 지원이 가능함

#### 〈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 절차(안) 〉



### 3. 신청 및 문의처

#### □ 신청 방식

- ‘25.2.25(화) 18:00까지 제출서류를 투자정보 플랫폼(ASSIST)에 제출
- 신청 문의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02-3775-6754, ykc@apfs.kr)
- 추천기업 및 서면평가 문의처
  - 스마트농업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726, jbo510@koat.or.kr)
  - 그린바이오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426, dream@koat.or.kr)
  - 푸드테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472, eintracht@at.or.kr)

####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번호	제출서류	수량
공통	①	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서, 개인·기업 정보 동의서	각 1부
	②	신청 자격 점검 리스트 및 증빙서류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투자확인서 주주명부 등)	1부
	③	최근 3개년도('21~'23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④	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 특히 증빙자료	1부
	⑤	주요 시장 분석 자료, 제품화 전략 자료	1부
	⑥	투자계획서, 사업 확장 계획 자료	1부
	⑦	조직 구성도, 인재 관리 계획, 프로젝트 이력 및 성과 자료	1부
	⑧	기타 자료(기관 추천서 등)	1부

\* ③~⑦번은 서면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5p ‘서면평가 항목 및 기준’ 참조

※ 신청접수 마감기한 이전 누락된 서류 없이 송부된 자료만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PDF 또는 한글파일 제출)는 윈도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후 제출

- 붙임 1. 「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서(양식)
2. 「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자격 셀프 점검 리스트(양식)
3.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4. 혁신성장 공동기준(6차 개정) 리스트(참고)
5. 혁신성장 공동기준(6차 개정) 품목설명서(참고)
6. 「혁신 프리미어 1000」 기관별 비금융지원(참고)
7. 「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매뉴얼(참고)